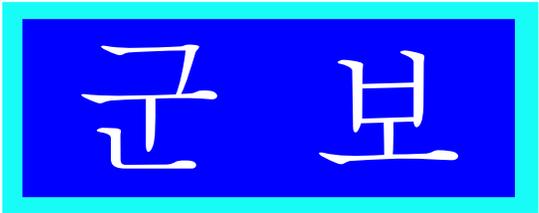




www.jp.go.kr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545호 2019년 4월 5일(월)

조 례

- 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 02
- 증평군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 06
- 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09
-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12
-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19
-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9

규 칙

-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 37

고 시

- 하천점용 변경허가 고시 ----- 49
- 하천점용 변경허가 고시 ----- 50
- 뇌실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 51
- 곡강골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 54

회									
람									

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4월 5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858호

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회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집행 및 공개 등의 대상이 되는 업무추진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증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규칙이나 지침을 준수할 것
- 2.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
- 3.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한 금액을 집행할 것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 1.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위배되거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친목회, 동호회 및 시민단체 등의 회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사적모임을 위한 비용이나 경비
-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때에 지급하는 격려금
-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6.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간 식사비
- 7. 그 밖의 의원의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며, 공개내용에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일시
2. 사용목적
3. 대상 인원 수
4. 사용 금액
5.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6. 그 밖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정보공개)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정보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 등)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2. 제4조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4.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 및 공개 거부 의 적정 여부
5. 그 밖에 의장이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점검 결과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환수,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4월 5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859호

증평군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증평군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 실시) ① 군수는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군민 육성을 위

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 가치·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 1. 군민
- 2. 증평군청 직원
- 3. 증평군 산하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증평군내 민간기업, 단체 등의 장에게 구성원 인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 3. 인성교육관련 전문 인력 양성
- 4. 그 밖에 인성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인성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성교육 관련 법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제5조 각 호의 업무
- 2.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인성교육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4월 5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860호

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이하 “군”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시책의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군이 발주한 공사를 시행할 때 관련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개별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군수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담당 공무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도급 계약 이행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평가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증평군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의 신고 접수
2. 그 밖의 하도급 관련 민원의 접수

③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정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4월 5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861호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증평군 지방보

조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지원 대상
- 2. 지원 규모
- 3. 지원 절차
- 4. 그 밖에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서류 심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등 검토의견서를 검토·작성하여 제10조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받은 제10조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검토의견서를 심의하고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받은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보조사업의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계획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과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나. 경비 부담 금액
 - 다. 경비 부담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적합 여부
-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 4.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부담 능력 유무(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
- 2.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에 교부 결정의 내용과 제7조에 따른 교부 조건을 적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①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1. 공사비: 지방보조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
- 2. 그 밖의 경비: 일시 또는 월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전 또는 지방보조사업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기획감사관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가. 예산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나. 재정 및 정책 업무 관련 단체의 임직원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정산) 군수는 법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확정된 지방보조금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

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8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4월 5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862호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제66조의3제2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치법규(증평군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1. 헌법과 법령의 준수
2.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치정신의 구현
3. 주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
4. 공익과 사익의 조화

5. 공정성 확보

제3조(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連署)를 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군 주민 중 19세 이상인 주민의 3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조(입법예고 방법) ① 군수는 자치법규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입법예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2. 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4.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6. 자치법규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자치법규 제정·개정 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설명 자료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조례와 규칙의 공포번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

라 조례와 규칙을 공포할 경우 공포번호는 조례별·규칙별로 연도 구분 없이 연속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6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는 법 제66조의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의 내용·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군수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세수입, 세외수입,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방안의 내용·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치법규의 정비) ① 군수는 현행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자치법규의 주요 부분이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주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할 때 다수의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정비할 수 있다.

제10조(훈령 및 예규 등의 준용)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군수가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훈령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관하여는 제2조, 제4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치법규”는 “훈령등”으로 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4월 5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863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등은 「공무원증 규칙」”을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반일단위”를 “반일 단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진단서가 첨부된”을 “진단서를 제출한”으로, “않는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군수는 임신 초기(16주 이내를 말한다)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군대에 입대를 하는 경우 1일의 휴가”를 “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1일의 자녀입영휴가”

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포상휴가 대상자 결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영 제7조의6제6항의 모성보호시간(이하 “모성보호시간”이라 한다) 및 제7항에 따른 육아시간(이하 “육아시간”이라 한다) 사용일의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⑪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일에는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다.

⑫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사용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일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 이 경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일 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증조부모·외조부모·외증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4월 5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864호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4월 5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865호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의 운동시설, 독서실, 산책로,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증평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하다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증평군 및 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사업
5.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6.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및 지원
7.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8.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사업 발굴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10.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8조(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설립 사실의 신고
-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 및 사업계획의 보고(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주민협의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 3. 그 밖에 주민협의체를 대표하거나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

③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협의체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사업별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주민협의체 대표
3. 해당 사업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임직원
4. 도시재생사업 관련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전문가
5. 해당 사업관련 이해관계자
6. 그 밖에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2.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분쟁 해결
4. 그 밖에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1. 해당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의장이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용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용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용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용자의 상환기간은 군수와 용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용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자의 조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용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3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특별회계 설치 시점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9년 4월 5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규칙 제355호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규칙심의회 구성) ①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의장: 증평군수
2. 부의장: 증평군 부군수
3. 위원: 국장,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각 과장

② 시행령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외부위원은 주민의 조례 제정

· 개정· 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에 위촉하고, 해당 조례안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의안의 상정의뢰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3.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4.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 하기로 결정한 경우

④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리 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바로 하급자가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

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6조(관계공무원 등의 참석)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다.

- 1.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 2. 의안에 관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장이 허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한 사람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간사)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8조(의안 제출 및 배부) 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6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안을 취합하여 심의회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추계서 작성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별지 제2호서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4. 재원조달 방안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7.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 비용추계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다.

제10조(제안 설명) 의안의 제안 설명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제11조(의결) ① 심의회 의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안가결

2. 수정의결

3. 부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위원 간 의안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

2. 자료 수집, 조사 등을 통하여 의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안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

안은 공포(원안가결) 또는 재의요구(부결) 여부를 심의한다.

제12조(대장의 관리 및 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심의회에 상정된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전자문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결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결과 알림)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의안이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우에 그 결과를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안 제출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의안의 정리) 의장은 의안이 심의회에서 의결된 후 명백한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제 회
연 월 일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심 의 의 결 사 항

안 건 명

제 출 자	○○○○ 과장 ○ ○ ○
제출연월일	년 월 일

기획감사관 심사필

조례 · 규칙 심의회 심의의안

안건번호		안건구분		제출자	
<p>1. 의 안 명:</p> <p>2. 제안이유 ○</p> <p>3. 주요내용 가. 나.</p> <p>4. 의안전문:</p> <p>5. 신 · 구조문대비표:</p> <p>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 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 제출의견: 마. 규제심사:</p> <p>7. 그 밖의 사항</p>					

[별지 제2호서식]

붙임 2

비용추계서

의안명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							
	○							
	소계(b)							
<input type="checkbox"/>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구 분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의존 재원	소 계							
	보 조 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합계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6. 덧붙이는 의견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과장 ○ ○ ○
연 락 처	835-○○○○

작 성 요 령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증평균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지방 교부세(분권·특별)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5. 덧붙이는 의견: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작성자 이름(부서명과 작성자의 이름),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의안명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비용 미발생) 또는 제2항 각 호

3. 미첨부 사유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과장 ○○○
연락처	835-○○○○

[별지 제5호서식]

제 회 증평군 조례 · 규칙심의회 회 의 록

일 시					
장 소					
참석대상 위 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심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건 - 조례안: 건 - 규칙안: 건 - 그 밖의 안건: 건 				
회의내용	아래와 같음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제 회 증평군 조례 · 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간 사:					
의 장:					

증평군 고시 제2019-30호

「하천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521번지 외 1필지 상 「2019년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5일

증 평 군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 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점용지역의 위치	면적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성명	주소				
2019-0 1	삼기천	증평군 상하수도 사업소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68	「2019년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따른 상수도관 매설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521번지 외 1필지 (덕상리 517)		일시 : 허가일 ~ 2019.12.31. 영구 : 허가일 ~ 영구

증평군 고시 제2019-31호

「하천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779-2번지 외 1필지 상 「에듀팜특구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하천점용 변경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5일

증 평 군



하천점용 변경허가 고시

허가 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점용지역의 위치	면적	점용허가 의 유효기간
		성명	주소				
2017-8- 1	문암천	증평군 상하수도 사업소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68	「에듀팜특구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상하수도관 매설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779-2번지 외 1필 지(송정리 788-3)	일시: 120.08㎡ 영구: 17.4㎡	일시 : 허가일 ~ 2019.12.31. 영구 : 허가일 ~ 영구

증평군 고시 제2019-3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곡강골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승인내용을 증평군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04월 05일

증 평 군



곡강골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1. 사 업 목 적

농업·농촌이 연계되고 지역특성과 발전방향에 적합한 지역경관 개선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여 마을의 합리적인 개발모델과 투자결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 도모

2. 사업 위치 및 내용

위 치	면적 (ha)	주 요 내 용	비고
증평군 증평읍 용강2리	63.7	- 지역경관개선: 곡강골 마을정원, 곡강골 마을숲, 곡강골 마을경관정비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 컨설팅, 경영지원 등	

3. 총사업비 : 505백만원(국비 350, 지방비 150, 부담 5)

4. 사업기간 : 2018. 1. ~ 2019. 12. (2개년)

5. 사업효과 :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역량강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6. 사업시행자 : 증평군수

7. 사용할 토지(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자

일련번호	읍,면	리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소	
1	증평	용강	212-2	도	261	65	증평군	증평군	
2	증평	용강	212-3	전	205	205	권*철	괴산군 사리면 소매리 ***	
3	증평	용강	212-4	전	60	60	권*철	괴산군 사리면 소매리 ***	
4	증평	용강	213-1	답	436	436	최*선	증평군 증평읍 곡강1길 *****	
5	증평	용강	213-2	도	36	24	증평군	증평군	

8	증평	용강	856-7	전	40	40	권*철	괴산군 사리면 소매리 ***	
9	증평	용강	282-1	잡	943	943	곡***회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	
10	증평	용강	282-5	도	218	9	충청북도	충청북도	
11	증평	용강	854-15	구	18,176	32	국(농림수산부)	국	

8. 열람장소 : 증평군청 건설과(043-835-3833)

9. 기타사항

기타 곡강골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른다.

증평군 고시 제2019-34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뇌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승인내용을 증평군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04월 05일

증 평 군



뇌실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1. 사 업 목 적

농업·농촌이 연계되고 지역특성과 발전방향에 적합한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여 마을의 합리적인 개발 모델과 투자결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 도모

2. 사업 위치 및 내용

위 치	면적 (ha)	주 요 내 용	비고
증평군 도안면 노암3리	190.1	- 기초생활기반확충: 뇌실신명마당, 신명문화생활관 정비 - 지역역량강화: 신명문화복지프로그램, 주민교육, 홍보, 경영지원 등	

3. 총사업비 : 488.6백만원(국비342백만원, 지방비146.6백만원)

4. 사업기간 : 2018. 1. ~ 2019. 12. (2년)

5. 사업효과 :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역량강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6. 사업시행자 : 증평군수

7. 사용할 토지(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자

일련번호	읍,면	리	지번	지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증평	노암	520-1	답	828	828	연*호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298번길**	

8. 열람장소 : 증평군청 건설과(043-835-3833)

9. 기타사항

기타 뇌실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른다.